

규제심사대상 확인

접수번호 : 제 2021-4659호

제 목 :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자격인정방법및절차기준일부
개정고시안

위의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자격인정방법및절차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(를) 검토한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
규제심사대상이 없음을 확인함.

2021. 10. 13.

※ 동 확인증은 위 법령 제·개정안에 대한 것으로, 이후 입법과정에서
내용이 변경되는 경우, 법령에 따라 반드시 규제조정실과 규제심사
대상 여부에 관해 협의를 거쳐야 함

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

